

■ **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6. 4. 3.>**

죽은 태아 [] 매장 신고서
[] 화장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$\checkmark$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발급일		처리기간		즉시	
부(모)	성명			주민등록번호	-				
	주소			전화번호					
	사산장소			임신주수					
	사산 연월일			사산사유					
	매장 또는 화장 장소			분묘 설치 연월일					
	화장 후 장사방법	☐ 매장 ☐ 봉안 ☐ 자연장([] 수목장등, [] 시설산분장, [] 해양산분장)			구분	☐ 공설 ☐ 사설			
신고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-	사산자(죽은 태아)와의관계				
	주소			전화번호					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(화장) 신고합니다.

신고인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제	호	죽은 태아 [] 매장 신고증명서 [] 화장				
죽은 태아	임신주수		사산사유		사산연월일	
	매장 또는 화장 장소				분묘 설치 연월일	
	화장 후 장사방법	☐ 매장 ☐ 봉안 ☐ 자연장([] 수목장등, [] 시설산분장, [] 해양산분장)			구분	☐ 공설 ☐ 사설
신고인	성 명		주민등록 번호	-	사산자(죽은 태아)와의관계	
	주 소				전화번호	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(화장)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시 · 도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관인

처리 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